

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70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노인일자리전담기관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니어클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노인일자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(안 제6조)
- 노인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기준 마련(안 제8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붙임5(내부의견 1건)

- 입법예고 : 2021. 8. 12. ~ 2021. 9. 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6
- 방침결정문 : 붙임7

< 붙임 1 >

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.

1.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·보급 및 수행
2.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
3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
4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,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.

제8조(중전의 제7조)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 및”을 “시장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노인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과장 공 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인정책팀장 두 현 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보 용 (행정 335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·보급 및 수행</u> <u>2.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</u> <u>3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</u> <u>4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</u> <u>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<p><u>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,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</u></p>

제6조 (생략)

제7조(노인일자리 위원회의 구성) ①

~ ③ (생략)

<신설>

제8조 ~ 제11조 (생략)

제12조(예산지원 등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3조 (생략)

본 조례」에 따른다.

⑦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.

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제8조(노인일자리 위원회의 구성) ①
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~ 제12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

제13조(예산지원 등) ① 시장은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